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13호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 의 자 : 신순옥, 김응규, 김민수,  
박정수, 정광섭, 홍기후,  
이종화, 이철수, 고광철,  
박정식, 김옥수, 이해선,  
구형서, 신영호, 안장현,  
김석곤, 이정우, 박미옥,  
이연희, 편삼범, 이상근,  
이지윤, 방한일, 지민규,  
유성재, 윤희신 의원  
(26인)

## 1. 개정 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의 전달체계·지원사업·협력기구 등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 다.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 라.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사업(안 제6조)
- 마.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 바.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안 제10조)
- 사. 통합지원 기관 설치·운영(안 제12조)

## 3.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 나. 관련 법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5호)
-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5. 10. 2., 여성가족정책과)
-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5. 10. 14., 감사위원회)
-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5. 9. 25., 정책기획관)
- 바.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방문 진료 및 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과 치매, 만성질환 등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

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및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 기관)**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하고 상호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도지사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대상자”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도민
  - 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등의 사유로 자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
  -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
3. “먹거리 돌봄”이란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지역 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시·군 또는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방안
3.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4.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5. 채용조달 및 채용분담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돌봄 및 요양 서비스
3. 주거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4. 질병 예방,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지원
5. 대상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식사배달, 공유주방, 이동형 마켓 등 먹거리 돌봄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도내 시·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규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 비 용 추 계 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 안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 충청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전부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 ○ 안 제6조(통합지원 사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은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2025년 본예산 1,352,934천원 (국비676,467 / 도비676,467)

- 노인성 질병과 치매, 만성질환 등 환자의 관리 및 예방 사업은 「충청남도 치매안심센터」\*등 다수의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2025년 본예산 11,133,543천원(국비8,906,834 / 도비334,006 / 시군비1,892,703)

-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 사업은 「일상 돌봄서비스사업」, 「충남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 비용추계 제외

\*일상돌봄서비스사업: 2025년 본예산 2,718,226천원(국비2,006,000 / 도비 356,113 / 시군비356,113),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지원

\*충남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2025년 본예산, 414,000천원, 시각장애인 차량이동지원

-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지원」 등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_ 비용추계 제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지원: 2025년 본예산 200,000천원(국비100,000 / 도비100,000천원), 암생존자클리닉 운영, 암생존자에 대한 상담·교육, 암생존자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사업은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수의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25년 본예산 241,450천원, 도내 장애인 가족 상담, 역량강화,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추진 등

-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및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_ 비용추계 제외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2025년 본예산 100,000천원(도비30,000 / 시군비 70,000),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임차보증금 등 주거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2025년 본예산 370,000천원(도비74,000 / 시군비 296,000)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운영」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2025년 본예산 1,917,260천원(국비 958,630 / 도비287,568 / 시군비671,062), 노인 건강측정 결과에 따른 스마트 기기(활동량계 등) 제공하고, 건강관리 전문인력 통한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 2025년 본예산 7,641천원(국비 5,349 / 도비 688 / 시군비 1,604), 장애인거주시설 내 응급상황 감지시스템 (IOT, AI) 운영사용료 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출연금)」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출연금): 2025년 본예산 350,000천원, 충남 복지정책 연구 사업비 지원

-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은 「민간복지 협력 및 증진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민간복지 협력 및 증진사업: 2025년 본예산, 250,000천원, 사회복지 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한 사회복지 민간분야 활성화 사업 지원

## ○ 안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발생 \_ **비용추계**

○ 안 제12조(통합지원 기관)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 발생 \_ 비용추계

## 2. 비용 추계결과

### 가. 대상

- 안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 안 제12조(통합지원 기관)

### 나. 추계의 전제

####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추계 대상별 전제

- 협의체 위원 30명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외부 위촉직 위원은 28명으로 가정함
- 통합지원 기관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충청남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 2025년 본예산, 130,706천원(국비65,353 / 도비65,35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716,670천원의 비용이 발생(연평균 143,334천원)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716,670천원(연평균 143,334천원)

(단위: 천원)

구분		연도					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세출	통합지원 협의체 (안 제7조)	12,628	12,628	12,628	12,628	12,628	63,140
	통합지원 기관 (안 제12조)	130,706	130,706	130,706	130,706	130,706	653,530
	소계	143,334	143,334	143,334	143,334	143,334	716,670
□ 총 비용		143,334	143,334	143,334	143,334	143,334	716,670

####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budget20@korea.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추계 상세내역

○ 통합지원협의체 (안 제7조) ≍ 63,140천원

- 연간비용 ≍ 12,628천원

- 세부내역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근거	향후 5년간 총 비용
통합지원 협의체 (안 제7조)	계	12,628천원	63,140천원
	참석수당	100천원×28명×2시간×2회=11200천원	11,200천원×5년=56,000천원
	여비	25.5천원×28명×2회=1,428천원	1,428천원×5년=7,140천원

####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협의체의 외부위원은 28명을 위촉하고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지급수당은 2시간 기준 1명당 200천원으로 가정함(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을 참고함)
- 지급여비는 대전-내포 개인차량 기준으로 가정함(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국내 여비 산출, 25,500원)

- 연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계
		세출	통합지원 협의체 (안 제7조)	12,628	12,628	12,628	12,628	12,628

○ 통합지원 기관(안 제12조) ≍ 653,530천원

- 연간비용 ≍ 130,706천원

- 세부내역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근거	향후 5년간 총 비용
	<b>계</b>	<b>130,706천원</b>	<b>653,530천원</b>
통합지원 기관 (안 제12조)	인건비	31,273천원×3명=93,819천원	93,819천원×5년=469,095천원
	운영비 (수용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건물유지비 등)	8,824천원	8,824천원×5년=44,120천원
	사업비 (긴급지원 심리치료, 의료비 등)	28,063천원	28,063천원×5년=140,315천원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통합지원 기관은 「충청남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인건비는 3명기준으로 인건비, 수당, 4대보험료 등 임
- 운영비는 수용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건물유지비 등 임
- 사업비는 긴급지원, 심리치료, 의료비, 법률지원비, 학업지원비 등 임

- 연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	통합지원 기관 (안 제12조)	130,706	130,706	130,706	130,706	130,706	653,530